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법령에 의한 저소득 근로자만이 면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일반영세민도 이와 형평유지

○ 소규모 서민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혜택 배제

○ 경과규정의 적용시기 경과

나. 주요골자

○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분양시 전액 면제

○ 최초 분양자중 1세대 2주택으로 확인 되는 경우 경감배제 규정 채택

3.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귀식)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근로자는 지방세면제혜택을 받아왔으나 일반영세민은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영세민도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과세형평을 기하고
- 감면조례의 재정목적이 소규모 서민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조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경감규정에서 배제시켜 조례를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